

승리는 생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인할 뿐



함석욱

- 1990년 1월 생
- 검정고시
-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
-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I. 들어가며

수험생활을 하며 지칠 때 즈음, 항상 독서실 지하 서재에 꽂혀있던 고시계를 보던 때가 엇그제 같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의 길 한 가운데에 놓여 불안에 떨던 그 시절이 아직은 꿈만 같네요.

이제는 이 고시계라는 책자에 저의 수기를 쓸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라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을 잠시나마 했으나, 짧은 수험기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말로 표현 못할 감정들을 되새겨보니 조금이나마 제가 해온 공부방법이나 과정들이 이 글을 읽는 수험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게 되네요.

II. 내가 걸어온 길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매일매일 방황을 했습니다. 그 나이 때에 해볼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봤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요. 1년을 그렇게 놀다보니 하루하루가 지겹더군요. 친구들은 아침이면 학교를 가고 저는 방안에 덩그러니 누워 '오늘은 뭘 하고 놀지' 라는 허무맹랑한 생각들만 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대학은 생각도 하지 않았고,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생활을 이어가는 도중 '이렇게 살다가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것만 같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가더군요.

어머니의 계속된 권유로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고 2007년 여름에 검정고시를 합격하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검정고시가 대입시험이기는 하나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김정고시 합격에 이어 '대학을 어떻게 가야하나'라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이 하나도 없던 터라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고, 때마침 2008년 초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모습을 보자니 너무 부럽기만 했습니다.

때마침 부모님께서 여기저기 대학에 갈 방법을 모색하시다가 재수학원이란 곳을 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영어시간에 S와V가 뭔지도 모르면서 얼굴은 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를 제외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던 때가 그 때가 아닐까 합니다. 매달 모의고사가 끝나면 친구들은 뒷풀이(?)라는 명목 하에 나가서 술을 마시기 일쑤였지만, 저는 묵묵히 학원에 남아 오답을 체크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지금 나가 노는 친구들만큼은 할 수 있을 것 이란 생각과 웬지 모를 두려움이 저를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한 결과 국민대학교 법과대학에 2009년도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학교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놀기 바빴고 '진로는 나중에'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1년을 허비했습니다. 밴드공연도 하고 법과대 학생회에서 이것저것 역할을 분담하여 바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군대에 가야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군대에 갈 때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추상적으로 '제대하면 국정원 시험을 준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12년 2월 군 제대를 하고 입대 전에 막연하게 꿈꿨던 국정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학교도 복학을 하여 2학년 1학기를 재학 중이었구요. 이때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에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대학교 4학년 1학기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전 당시 2학년 1학기를 재학 중이었고 스트레이트로 2년을 더 다녀야 지원 자격이 생기는데 그 2년 동안 학점관리며 시험과목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네, 너무나도 생각이 어렸습니다.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았고, 제대할 시기 쯤 나가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자신감 하나로 이 세상과 맞서려 했던 제가 너무 작아보였습니다. 지금의 저로써도 어찌 저렇게 미련한 생각을 했을 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국정원 준비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때부터 학교 전공수업을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법 학습업을 중심으로 교양수업은 거의 듣지 않았던 기억이 나네요. '내 전공이 법학이니깐 일단 법학부터 섭렵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수님들을 한분, 한분 찾아뵈었습니다. 교수님들을 뵈 때마다 항상 제가 했던 질문은 "제가 어떤 진로를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학교 이호선 교수님께서 제게 그러시더군요. '사법시험을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사법시험? 그걸 내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곧바로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장에 전공수업도 벽찬대 대한민국 최고의 시험을 준비한다? 이거 내 인생의 가장 청춘일 이 시기를 독서실 공부방에 쳐 박혀서 허비하다 마는거 아냐?'

그때 마치 교수님께서 제 생각을 읽으셨는지 “딱 3년만 해보고 안되면 다른 길로 가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걸 니 꿈과는 다른 것이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일 뿐이야 행복과 등치시킬 만큼 거대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교수님 연구실 문을 닫고 나와 수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몇 날 몇 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학생들만이 합격의 가능성을 놓고 보는 시험이 사법시험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법시험을 만류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제 방황하던 시절이나 대학교 1학년 때 그렇게 놀기만 하던 제 모습을 봐온 분들은 ‘야 니가 무슨 사법시험이야. 괜히 시간 허비하지 말고 학점관리 잘하고 해서 취업해. 그게 가장 무난한 길이야’라는 등의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기가 생기더군요. 도대체 사법시험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길래.. 하지만 나중에 2차 시험 마지막 과목인 민법을 보고 터덜터덜 내려오는 길에 ‘내가 이 미친 짓을 왜한다고 달려들었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결국 이런저런 고민을 하는 중에 일단 토익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그게 2012년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2학년 2학기에 법학 35학점을 이수했던 터라 사법시험 1차를 경험삼아 한번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좀 알아야 풀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에 선배님 한분께 연락을 드려 기본서를 추천해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책값이 예상과 달리 좀 비싸서 놀랐습니다. 어쨌든 시험장에 가기 전 약 3개월 간 현행민을 단순히 소설책 읽듯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말인지 몰라도 일단 넘어갔습니다. 아무생각 없이 시험을 보려했지만 막상 시험 전날이 되니 겁이 났습니다. ‘시험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한 문제도 못 건드리고 나오면 어떡하나, 아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내지는 포기를 해버릴 만큼 점수가 형편없으면 어떡하나’라는 등의 생각들이 문득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험장에 가니 사람들이 책을 쌓아놓고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저는 뭇도 모르고 기본서 3권만 달랑 가져왔는데 뭐 어딜 봐야 하는 지도 모르겠고 해서 베게로 쓰고 왔습니다. _-. 그래도 시험시간 만큼은 1문제라도 더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 법감정, 즉 리얼마인드로요.

시험이 끝나고 나를 가재점을 한다고 해봤는데 과락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Ⅲ. 제1차시험의 준비

웬지 모르게 1학기를 다녀야 할 것만 같아서 학교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어느 합격수기에서 어떤 분이 병행하여 합격을 하였다는 글을 보고 1학기만 병행 해보고 안되면 휴학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뜻대로 안되더군요. 항상 주변에 친구들이 있던 터라 만나면 잡담이 기본 30분은 땀습니다. 수업도 학점을 가득 채워 듣는 바람에 수업듣느라 정신도 없었습니다. 혹시 모를 불합격을 대비하여 학점관리는 또 해야 겠다 생각을 했으니까요. 결국 헌법은 통지구조를 못보고 형법은 절도죄 전까지, 민법은 재산법까지만 보고,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상당히 기본이 언짢았습니다. 내 열정이 부족한 탓일까. 곧바로 휴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인지 모르겠으나 학원은 안다녀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집 제방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름의 무더위로 인해 집 앞 독서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강의 공부방법은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시던 선배님과 사법연수원에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현장에 계신 선배님들을 찾아보며 녹음을 하거나 노트에 적어가며 여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통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하게 설명을 하기는 어렵지만 공부패턴이나 수험기간동안의 자기관리 등에 있어서는 일관된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시험 날 직전까지 기본서 10회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원 강의도 듣지 않았고 학교도 가지 않았으니 제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었으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시험 직전까지 기본서 12회독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판례집 등은 7회독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먼저 기본서 헌법은 정회철 저 기본강의 헌법. 형법은 신호진 저 형법요론, 민법은 지원림 저 민법강의를 봤습니다. 이때는 단순히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각 단원마다 기본서 정독을 하고 해당 단원의 기출문제를 풀고 기출된 지문을 모조리 기본서의 빨간펜으로 밑줄을 긋는 작업을 했습니다. 문장 끝에는 몇 년도 기출인지 까지 적었습니다. 틈틈이 고시계에 담겨 있는 합격수기도 참고했습니다. 수기들을 볼 때면 항상 무언가 자신감이 가득 차 다시 책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면 모든 합격자의 공부방법이 거창하지 않았거든요. 정말 단순하게 서술되어있었습니다. 또 합격자들마다 기본적인 공부방법의 공통점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하에서는 제가 각 과목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간략하게 적시해보려 합니다.

1. 헌법

헌법은 크게 헌법재판소 판례와 부속법령, 헌정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하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판결 포함)을 암기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먼저 어떤 사건이 위헌인지 간략하게나마 그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면 절반은 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헌재판결 중 위헌판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으며, 그 외에는 모두 합헌판결이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1%의 위헌판결을 알게 되면 모르는 지문이 나왔을 시 내가 아는 위헌판결이 아니라면 합헌이라는 역발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합헌판결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김유향 강사 저 헌법중요판례200'이라는 책을 사서 헌법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판례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합헌판결은 그 취지보다는 판결이유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강사가 강조표시를 해놓은 부분을 위주로 책을 읽어 나갔습니다.

다음으로 부속법령과 헌정사는 이해를 요한다기 보다는 통 암기가 요구되는 것인데, 이 역시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선불리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글파일로 기출문제집에 수록된 부속법령과 이와 관련성을 갖는 부속법령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여 식사를 하거나 집에서 독서실을 왕복하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수도 없이 봤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어느 부분에서 변형을 가할지 대강의 모습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엔 A4용지가 너털너털해지더군요. 헌정사의 경우는 보통 정회철 변호사 저 기본강의 헌법에 수록되어있는 헌정사를 공부하게 되나 이 역시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특히 헌정사는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건국헌법부터 5~6개 제도씩 두문자를 따서 외우는 편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 형법

형법은 80%가 대법원판례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나머지 20%는 중요한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에서 사안의 포섭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파악했습니다. 판례의 경우에는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보되 판결이유까지 책에 실린 내용은 그 이유 부분까지 숙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는 부분은 먼저 빨간색 형광펜으로 성립부분을 칠하고, 무죄부분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무죄라는 부분에 칠해놓고 가독성 및 읽어나가는 속도를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간혹 이해가 가지 않는 판례들, 즉 어떤 원리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판례들이 보일 때에는 항상 대법원판례검색 사이트에서 판례전문을 읽어갔습니다. 사실 판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죠.

형법은 1차 시험에서 점수를 획득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자자하고 저 역시 가장 점수 올리기 수월한 과목으로 인식을 하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다만, 2차 시험에서는 형법이 합격, 불합격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이때 범죄체계론을 잘 숙지해 두는 것도 나중을 위한 좋은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 민법

민법은 제1차, 제2차 시험에서 모든 수험생의 발목을 잡는 과목이었습니다. 사실상 방도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고, 단순한 법률요건과 효과를 안다고 하더라도 판례를 이해하거나 문제를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아무래도 사적자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체계라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안정성의 비교형량이 사안에 따라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는 반드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체계 안에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해석과 유추적용의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타나는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법을 공부하기에 앞서 법조문의 체계를 정확히 숙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본서에 담겨져 있는 판례를 가능하면 전문을 통해 숙지하는 것이 초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틀을 배경으로 사실관계에 법의 적용이 어떻게 녹아들어가는지를 이해한다면 훨씬 더 수월한 학습방법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회독 정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수해야 하고 이때 비로소 인내심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술한 방법으로 약 8개월간 저 자신과 싸워나갔습니다. 다만, 저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학원에서 직접 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아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원 스케줄 보다는 1달 내지 1달 반 정도 커리큘럼이 늦었습니다. 다만 그 1달 내지 1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현형민을 1회독 더 하는 방법으로 회독수를 계속해서 늘려갔습니다.

진도는 하루에 12시간 공부를 한다는 가정 하에 2시간 예습을 하고, 1시간 문제를 풀고, 3시간 동안 복습 및 기본서에 파란색으로 출제지문을 밑줄 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어디 질문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서 전문을 보는 것이 다였던지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끝까지 물고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기억이 오래 남게 되어 이해는 안되더라도 답은 맞추게 되더군요.

이렇게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014년에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됩니다. 당시 2013년도 1차 컷이 너무 높았던지라, 제 점수를 가지고 굉장히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웬지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 자려고 누우면 또 떨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엄습해오던 그때 법률저널에서 컷을 굉장히 낮게 잡아 희망의 끈을 잡고 그대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IV. 제2차시험의 준비

제1차시험이 발표가 나기 직전에도 그랬고 발표가 난 후에도 그랬듯이 친구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예비순환을 인강으로 들었지만, 강의만 듣고 복습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솔직히 책상에 앉기가 싫었습니다. 초시에는 욕심도 없었거니와 합격하신 선배들 또는 공부하고 계신 선배들이 '어차피 1순환이랑 강의내용이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대강의 전체적인 흐름만 파악하자'라는 생각으로 초시 직전까지 강의만 듣고 신명나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초시날짜가 다가오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얀 백지에 내 손으로 직접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또 목차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잡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법학의 중심은 목차에 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래도 이왕 볼 시험 법전은 받아오자라는 생각으로 4일 내내 고사장인 한양대에 가서 답안지를 채워나갔습니다. 사실 답안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주로 쓰는 식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설대립은 무언가 법전을 찾아보았을 때 법의 공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은 가차 없이 만들어 냈습니다. 이항대립구조로 긍정설, 부정설 식으로요. 물론 판례는 없으니 만들지 못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판례가 긍정설 같다 싶으면 판례의 입장이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2지문인가 실제 그러한 학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연히 추후에 열람신청은 하지 않아서...

초시를 보고 나서 9월 즈음 발표가 났습니다. 성적을 보니 과락이 2개였습니다. 무언가 자
신감이 생겼습니다. ① 일단 제가 약필이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았
다는 사실, ② 후사법은 생각보다 점수를 후하게 준다는 사실, ③헌민형은 정말 잘 쓰지 않
으면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사실 등을 깨달았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주관식 시험인
데다 채점자가 여럿이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역시 운이 따라야만 하는 것인가 하
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초시가 끝나고 7월 초, 2차 준비는 도저히 혼자 할 자신이 없어서 신림동에 가 학원을 다
녔습니다. 다만, 당시 경제적 여건이 안돼 10월까지 인천에서 신림동까지 매일매일 통학을
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계속해서 핸드북과 같은 소재자들을 보았습
니다. 지칠 때면 부모님께 '방을 얻고 싶다'는 말이 하고 싶어 수도 없이 목까지 차 올라왔지
만 당시 상황에 비추어 그러기가 어려웠습니다. 나중엔 체력이 동강날 것만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자취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합격하신 선배가 살던 원룸에 자리를 잡게 됐
습니다.

대략의 2차 수험생활을 말씀드리자면, 매일 아침 6시 30분에 기상을 했습니다. 7시까지
씻고 옷을 입고 가방을 메고 곧바로 고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보통 그 시간에 가니 이제 막
음식이 준비가 완료된 상태더군요. 사람은 저 말고는 거의 본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를 약 15분간 흡입(?)하고 7시 30분까지 학원으로 갔습니다. 아침마다 시험이 있던지라 시
험을 보기 직전까지 전날 공부했던 부분을 빠르게 읽어 내려갔으며, 판례는 눈을 감고 중얼
중얼 머릿속에 되새김질을 하였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잠시 쉬는 타임을 갖고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강사님 바로 앞에, 즉 맨 앞자리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을 먹고 집에와 낮잠을 약 20~30분 정도 자고 독서실로 향했습니
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대략 12시 즈음 집에 와서 씻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정말 무미건조
한 생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날그날 진도를 뺄 생각뿐이었기 때문에 하루가 하루 같지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하에서는 제2차시험 역시 각 과목마다 제 공부방법을 적시해보겠습니다.

1. 헌법

헌법은 1차와는 다르게 부속법령과 헌정사가 출제되지 않더군요.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
으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나 아무래도 '사례형' 문제에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
까 생각합니다.

헌법은 김유향 강사 저 '헌법300'이라는 작은 책자로 공부했습니다. 주변지인들이 '정말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춘 책이 아닐까 싶다'라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서술할
양도 굉장히 임팩트 있고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있어서 그 외 다른 책은 잘 보지 않았지만,
저는 위 책자도 양이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을 하여 화이트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워버리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좀 더 추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 부분은
포스트잇에 적어 풀로 붙여 달달달 암기를 하였습니다.

헌법의 꽃은 뭐니뭐니해도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평등의 원칙의 포섭인데요. 이 중에서도 '과잉금지원칙의 포섭'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어려웠습니다. 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4단계를 걸쳐서 시안을 포섭해야 합니다만, 헌법은 타 과목에 비해 일반적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시사, 문제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배경지식이 고득점을 좌우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사에 관심이 많고 신문을 많이 보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의 균형성에서 쓸 말이 많아지고 그것이 단순히 나열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고득점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피해의 최소성' 인데요. 이에 앞서 목적의 정당성을 반드시 그럴싸하게(?) 서술해야 이하에 쓸 말이 많아지더군요. 보통 목적의 정당성은 각 법률의 제1조가 정하는 목적을 참작하게 되는데 99%는 목적은 정당합니다. 따라서 기본 뼈대에 살만 조금 붙이는 식으로 서술을 해나가면 일단은 무난하게 현출이 됩니다. 포인트는, 항상 사실관계를 읽어나가면서 당해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포섭이 무난하게 가능해지고, 법익의 균형성을 술술 쓰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본안 판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각 헌법재판의 청구요건을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숙지해야 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빠짐없이 꿰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빈도출제인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과 예외를 완벽히 숙지하고, 경우에 따라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제도와 같은 각 종 제도에 대한 개념과 내용들도 부수적으로 암기하고 있어서 그런지 추가적인 서술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2. 형법

형법은 제1차시험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고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 답안을 올면서 작성해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면, 한번 길을 잘못 들면 이하의 문제점들이 모두 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법은 이재상 강사의 '더 형법'을 기본서로 잡고, 이재상의 케이스의 바이블(이케바), 하태훈 저 '형법연습'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초기에는 하태훈 교수님의 형법연습이 형법의 기본을 다지는 데에는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범죄체계론(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형식을 가장 중요시해야 합니다. 가령, 문제를 읽어다가 책임과 관련된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가 먼저 눈에 띄었다고 해서 이를 가장 맨 위에 서술하게 되면 범죄체계론을 역행한 꼴이 되어서 이는 형법학에 있어서는 0점을 맞아도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위 순서대로 답안

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야 했구요, 그렇기 위해서는 각 논의가 위 3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암기해 두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행법이 어려운 이유는 행위자의 각 행위 그 순간순간을 범죄로 묶어 포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눈으로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도 놓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공범관계가 나타나면, 이것이 공동정범인지 교사인지 방조인지를 캐치해 나가야 한다는 점, 공범의 문제라면, 정범의 행위를 먼저 서술하고 그 뒤에 공범의 행위를 서술해야 매끄럽게 답안이 작성된다는 점 등 굉장히 디테일한 스킬들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배우는 입장은 물론 가르치는 입장에서 많이 애를 먹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형법은 판례의 결론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문제가 수월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 때 공부를 충실히 하셨다면,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3. 민법

민법은 2차 때는 아마도 지옥을 맛보게 되는 과목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맞는 만큼, 다른 과목에 비해 전혀 양이 줄지 않는데다, 판례가 수도 없이 많아서 각 논점에 대한 암기해야 할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교재는 윤동환 강사의 '민법의 맥' 한권으로 다 끝내버렸습니다. 맥 안에 사례도 모두 들어 있고, 강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쓰신 책이라 웬만한 논점은 하나도 빠짐없이 수록이 되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상 민법은 학원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혼자 민법의 주요 논점들을 캐치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아마 1년 내에 7법을 모두 충실히 공부하기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법은 각 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요건, 효과를 명확히 이해하고 판례가 추가하는 요건이나 구체적 타당성에 비추어 유추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된다면 갈피를 못 잡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민법이 어느 정도 법리에 대한 이해능력을 타고나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민법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논점 누락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실제 시험에서 85점을 맞았기 때문에 노력이 우위에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민법은 기본적인 흐름을 잘 타고, 모의고사 문제를 충실이 풀어나가거나 사례문제를 충실히 풀어나간다면, 고득점은 아니어도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4. 상법

상법은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민법보다 조문이 더 많고 매우 복잡하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게다가 속칭 2단 준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 그대로 준용조문이 2번 이상 연속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법 당시 왜 이런식으로 구성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부하기가 매우 번거롭고 귀찮은 측면이 많습니다. 교재는 김혁봉 저 '상법 신강'과 동 저 사례집을 병행했습니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회사 편에서 '주식회사'부분만이 항상 제1문으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강사님들도 주식회사파트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그 외에는 사실상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험생들도 합자회사 등은 책을 아예 찢어버리거나 안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모한 것은 아닌가, 그러다 출제되면 어쩔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역시 수험전략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올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작업이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요.

회사법은 보통 1인 회사부터 시작하여 학설과 판례의 숙지를 역시나 기본으로 합니다만, 특정 제도에 대한 물음이 간혹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이사의 보수'나 '이해관계인의 주식'과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보통 기출논점으로 많이 출제되었고 상법은 기출을 풀어보신다면 느끼시겠지만 보통 기출 된 문제가 다시 기출 되는 경우가 다른 과목에 비해 허다합니다. 저 역시 상법을 어찌해야 될지 막막해 하던 찰나에 김남훈 강사님이 기출문제를 따로 정리한 책자를 나눠주신 덕에 막판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았고, 실제 시험에서도 괜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법은 기출문제와 정확한 풀이를 가지고 반복해서도 무난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즉, 주주와 대표이사 내지 평이사와의 관계라든가, 신주발행, 회사의 설립, 변태설립사항 등이 빈도로 출제가 되고 기출문제를 잘 분석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논점이 겹치기 마련이라 공부 양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통 2문의1이 어음법, 2문의2가 보험법 또는 상법총칙이 출제되어 왔습니다. 어음법은 보통 수표법 보다는 어음법의 출제가 많이 됐는데요. 어음 중에서도 약속어음에 대해서만 출제가 이루어지는 형편이라 환어음의 비중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출제 교수님들께서도 이를 감안해서 난이도는 그리 어렵게 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상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려(?)를 받는 셈이죠. 따라서 상법은 학원모의고사보다 실제 시험이 더 문제가 깔끔하고 논점도 눈에 띄 정도로 출제를 하는 경향이라 가장 빠르게 답안 작성이 가능했고, 시간도 남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5. 행정법

행정법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고 가장 수월하게 느낀 과목 중 하나입니다. 보통 법리의 경우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따르기 마련이며, 그 예외를 외우는 것이 순서가 되는데, 행정법은 제 소견으로는 원칙이라는 것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판례를 수도 없이 외워야 하는 과목입니다. 아시다시피 행정법총론은 법전이라는 것이 없고 강학상의 용어들을 통해 조문이 적시하고 있는 허거나 특허 등이 강학상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 탐색하여야 하고, 보통 어떠한 행정행위가 있다면 그것이 소송요건에서 '처분'에 해당하는지, 본안판단에서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가려내어야 하며, 판례가 말하는 기속재량은 무엇인지를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가령 법 조문이 '허가'라고 기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학상 일반 허가, 즉 경찰금지 해제인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예외적 허가'를 말하는 지를 판례를 통해 숙지해야 합니다.

교재는 정선균 강사의 '행정법 엑시스'와 사례집을 병행 했습니다. 행정법은 크게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법각론(개별 법률)으로 나누어 고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법은, 의무이행심판 - 재처분의무 - 직접처분이라는 코스를 중심으로 가구제수단으로서 임시처분이라는 제도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행정소송법은, 우선 의무이행소송이 현행 법상 도입되지 않아 불가하다는 판례의 취지를 실시한 후에, 취소소송 - 재처분의무 - 간접강제라는 코스를 중심으로 가구제수단으로서 집행정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행정법은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례를 읽어나가면서 각 제도의 연관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 각론은 제가 추측한 바로는 보통 사법시험이 공물법이나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등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부수적으로 경찰행정법이나 조세법, 환경법 등을 중요한 것 위주로 과감히 버릴 것은 버리고 공부했습니다. 저는 앞 만 보고 달리는 타입이라 한번 제겨 놓은 것은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던져버립니다. 따라서 양 줄이는 데에 목표를 두고 책을 빠르게 읽어나가되 판례의 태도를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항상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6.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누구나 어려워하는 과목이라, 사실 방도가 없습니다. 강사가 짚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특급, A급이라고 짚어준 것이 보통 150여개가 되기 때문에 양이 막 판까지도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창한 강사가 쓴 '통합 민사소송법'으로 막판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난해하고 어려운 민사소송법을 굉장히 쉽게 풀어쓴 책인데다 디테일 또한 우수한 교재로 정평이 나있는지라 흠잡을 곳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소송법은 '제소 전 화해'와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소를 제기한 후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과정을 규율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법은 대강의 커다란 개요를 잡아놓은 후에 세부적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짜고짜 각 제도들을 암기하고 이해한다면 즉, 본 제도가 소송요건에 해당하는지 본안에 해당하는지 등을 모른다면,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질 것이며, 암기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사법시험의 경우에도 출제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난해한 논점이나, 판례가 없는데 학설 대립만 있는 부분은 출제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시고,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7.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역시 제가 굉장히 흥미를 갖고 공부하던 과목입니다. 교재는 정주형 강사님의 ‘형사소송법 강의안’ 한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례집도 중간 중간 보긴 했으나 대체로 서술을 어떻게 하는지 등의 스킬을 위한 참고서 정도로만 활용을 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과는 달리 검사의 공소제기 이전 단계인,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을 시작으로, 조서 작성, 공소제기, 판결의 절차로 이루어지므로, 즉 공소제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전제로 논의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저 같은 경우 형사소송법은 독자적인 특수성과 제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관련성을 많이 가질 것이라는 생각은 큰 오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형법은 행위자의 행위 순간, 순간의 평가를 다룬다면, 형사소송법은 행위자의 행위가 있고난 후의 일련의 수사기관의 절차를 규율하고, 수소법원의 판결에 이르는 절차를 규율하며, 나아가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규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꽃은 증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탄핵증거 등 다양한 증거관련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증거재판주의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증거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술한 수사단계의 위법성이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와도 관계가 되며, 굉장히 연쇄적인 관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는 체포가 적법한지, 구속이 적법한지, 조서작성과정에 위법성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하며,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인지, 전문법칙인지 여부를 깊이있게 고찰해야 했습니다.

V. 마치며

수기를 작성하면서 이 글을 읽으실 수험생 여러분을 생각하니 한 문장, 한 문장이 턱 없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그 간 제가 읽었던 수기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해보고자 노력했으나 쉽지 않더군요.

작성 중 계속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제 보습이 자꾸 떠오르네요. 걸 잡을 수 없는 불안감을 떨쳐내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가 결심한 것 중 하나가,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한번 울어보자’ 였는데, 2차 시험 1달을 남기고 고시원 방 안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살면서 코피 한번 터진 적이 없었는데 어떤 날은 자고 일어나니 코피가 터져 코 주변이 피범벅이 돼있더군요. 하지만 힘들다고 도피를 하거나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지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는 때마다 항상 ‘아 합격하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부는 언제나 책과의 싸움이 아닌 본인과의 싸움이라 생각합니다. 단편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암기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합격의 영광을 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 한분이 제게 “하늘이 지

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을 때마다 생각 했습니다. ‘행여나 불합격을 하더라도 제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공부를 했는가, 과연 혹여나 앞으로 올지도 모르는 불합격이 나에게 부당한 처사일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온 합격이라는 선물은 결코 제 노력 만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아침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셔서 저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응원, 묵묵히 홀로 걷는 아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지켜봐주시며 제 뒤를 지켜주시던 아버지, 서로 공부하느라 힘든 과정 속에서 항상 앞에서 끊임없이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준 우리 정이, 인생의 선배로서 매번 쓰디쓴 말씀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정태형, 원상이형, 합격의 선배로서 마지막까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 주신 선영이누나와 준형이형, 힘들 때면 먼 신림동까지 와서 밥 한 숟가락, 술잔 한번 기울여 주던 지혁이 등등 어찌면 사법시험의 합격은 합격과 건줄 수 없는 제게 주어진 과분한 가족과 지인들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확인할 뿐’이라 하셨던, 그리고 제게 사법시험이라는 큰 뜻을 품게 해주신 이호선 교수님께서도 이 자리를 기회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수기 읽어주심에 감사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